

예 천 군



군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1647호 2025. 9. 11.(목)

선 람	기 관 의 장

고 시

○하천점용 허가 고시(예천군 공고 제2025-110호)

공 고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공고 제2025-1275호)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예천군 공고 제2025-1281호)

회 람									
--------	--	--	--	--	--	--	--	--	--

발 행 예천군 편찬 홍보소통과(전화 650-6071)

하천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점용을 허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7항의 규정에 의거 하천의 점용허가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예 천 군 수 (인)



구 분	하천점용허가
하 천 명	한천(지방하천)
점 용 자 주 소	(사)국가무형문화재 예천통명농요보존회 예천군 예천읍 보문로 105
위 치	예천군 예천읍 남본리 310-1번지
점용면적 (허가량)	997㎡
점용목적	토지의 점용
사업개요	예천무형유산 합동발표회
점용기간	2025년 9월 12일 ~ 2025년 9월 13일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예 천



1. 조례명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현행 도시가스 보조금 공급사업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현실화함으로써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 변경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나. 용어 정비(안 제2조)

다. 보조금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변경(안 제5조 ~ 제6조)

- 지원대상 : 기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길이 100m당 일정 세대수 충족 지역에서 도시가스 미공급 취약지역 전체로 확대
- 선정기준 :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 선정

라. 공급신청 절차 간소화(안 제7조)

- 공급희망자가 사업신청 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여 신청자 부담 완화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조: 지역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나. 성명(기관 또는 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방문 제출

1) 전자우편(이메일) : yangsh418@korea.kr

2) 주소 :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지역경제과

3) 팩스 : 054-650-60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지역경제과(전화: 054-650-6566)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정(안)	수 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예천군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의3에 따라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군민의 연료비 부담 경감 및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자”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예천군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도시가스 공급시설”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본관, 공급관, 내관 및 정압기를 말한다.
3. “취약지역”이란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경제성을 확보할 수 없는 도시가스 미공급지역을 말한다.
4. “취약계층”이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

계층을 말한다.

5. “세대”란 도시가스 계량기의 설치대수 단위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및 조례와의 관계) 보조금의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협약체결)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사업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5조(지원계획의 수립 등) ① 군수는 사업자의 도시가스 공급 사업계획 등을 반영하여 도시가스 공급 보조를 위한 지원대상 및 규모 등을 포함하는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금 지원예정 금액이 낮은 지역
2. 도시가스 공급신청 세대수가 많은 지역
3. 그 밖에 도시가스 공급이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③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사업자에게 도시가스 공급시설 공사비 산출 내역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군수가 요청한 자료를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대상 및 규모)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비의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1. 제2조제3호에 따른 취약지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서 사업자와 사전 협의가 이루어진 지역

② 제1항의 보조금 지원 한도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군수가 정한다. 다만, 도시가스 공급시설 중 내관 시설비는 취약계층에 한하여 50% 이내로 정하며 그 지원액은 세대당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7조(지원신청) ① 도시가스 공급을 희망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별지 제1호서식의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급희망자의 연서를 받은 도시가스사용신청 세대내역

2.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에 대한 지원대상 적정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신청자(대표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 ① 사업자는 제5조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에 대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와 집행내역을 확인한 후,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예천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신청서

신 청 인	①단위 사업명			
	②성명(대표자)	③생년월일		
	④현 주 소	(전화 :)		
⑤가구수(세대수)				
⑥공급받을 장소		공사시점	예천군	
		공사종점	예천군	
⑦배 관 연 장		m		
⑧도시가스공급확인		상기와 같이 도시가스 공급(예정)지역임을 확인합니다. 가스공급사업자 (인)		
「예천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예 천 군 수 귀 하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예천군 조례·규칙 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5년 9월 11일

예 천 군 수



1. 조례명: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상위법인 「장애인복지법」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고, 장애인 복지 사업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장애인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장애인 복지 사업내용 정비(안 제3조)
 - 사업명을 사업의 내용으로 작성하여 상위법의 용어 변경으로 인한 변동성을 최소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함.

4. 개정조례안

- 붙임과 같음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일까지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예천군수(참고 : 사회복지과장)에게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 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 및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 기타 참고사항 등

다. 제출 방법 : 서면, 팩스, 전화, 전자우편, 방문 등

- 주소 : 우)36826 경북 예천군 예천읍 충효로 111, 예천군청 사회복지과
- 전화 : 054-650-8495
- 팩스 : 054-650-6209
- 전자우편 : ssinhy@korea.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예천군청 사회복지과(전화: 054-650-849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사항은 예천군 홈페이지(www.ycg.kr) 『열린군정-군정소식-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정(안)	수정(안)	수정사유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예천군 장애인 복지증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지원대상)”을 “(지원사업)”으로 하고, “이 조례에”를 “① 이 조례에”로 한다.

제3조제1호 내지 제18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 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에 관한 사업
3. 장애인의 사회, 문화,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관련 대회 및 행사 참석 지원
5.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7.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권익 증진에 관한 사업
8.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지원에 관한 사업
9.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의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
10. 그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제6조제2항 중 “제보조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단체 및 시설로 한다.	제3조(지원사업) ① 이 조례----- ----- -----.
1. 시설 운영 관리	1.~18. <삭 제>
2. 시설 기능 보강(신축·증축, 개보수 등)	
3.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4. 장애인 복지증진 워크숍·상담·사회교육 등 지원 사업	
5. 장애인 컴퓨터·점자·보행·수화·음악교실 등 지원 사업	
6. 장애인 체육 및 수련대회 등에 관한 사업	
7. 장애인 국토순례 및 문화·자연 현장 체험 등에 관한 사업	
8. 교통사고 예방 캠페인·교통사고 피해자 상담 등에 관한 사업	
9. 장애인 단체별 경기대회 및 행사참석 지원	
10. 장애인 단체 교류증진 및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11. 장애인 편의시설 및 상담지원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12. 농아인 동료 상담요원 활동 지원 사업	

- 13. 장애인 및 관련 시설 종사자 권익증진 등에 관한 사업
- 14.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 15.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
- 16.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 사업
- 17.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관한 사업
- 18.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

<신 설>

② 군수는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할 수 있다.

- 1. 장애인의 날 등 장애인관련 기념행사 지원에 관한 사업
- 2.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관한 사업
- 3. 장애인의 사회, 문화, 교육 등 역량강화 지원에 관한 사업
- 4. 장애인관련 대회 및 행사 참석 지원
- 5. 장애인 단체의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 6. 장애인 편의시설 및 상담지원 등 이동권 보장에 관한 사업

	<u>7.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종사자의 권익증진에 관한 사업</u> <u>8.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 지원에 관한 사업</u> <u>9.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자 자립생활 정착금 지원사업</u> <u>10. 그 밖에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사업</u>
제6조(지도·감독) ① (생략) ② <u>제보조금</u> 을 지원받은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는 군수가 보조금지원업무에 관한 관리를 위해 자료제출, 보고 및 점검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u>보조금</u> ----- ----- ----- ----- ----- -----.